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0월 30일, 추미애의원 등 17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0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2024.11.20.자로
직접 회부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4.11.26.) 상정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4.12.26.) 상정 · 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02.17.)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9.) 상정 · 소위
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추미애의원)

우리나라는 국가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첨단산업은 대용량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수도권 등 대규모 전력수요처에 고품질·대용량의 전력망이 신속히 구축되어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설비의 확충은 대규모 전력수요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공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하고, 입지선정 관련 주민수용성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주도의 범정부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개선 등 국가가 사업시행자를 체계적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근거리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규정을 두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설비의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수용성 강화방안을 마련함.

이를 통해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구축하게 하고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박희석)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생략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2.17.)에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대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